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7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김정재·박충권·이헌승

이달희 • 서일준 • 박성민

김소희 • 유영하 • 김승수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%, 공공임대 약 8%, 민간임대 약 3 2%로 구성되는데,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,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,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.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(가계부채증가), 전세사기,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,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,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. 이에 따라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,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

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.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·준자율형·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, 임대료 규제, 임차인 자격,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(안 제2조제5호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라목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"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"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 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가임대주택"으로 한다.

- 5의2. "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이란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 - 가. 자율형: 이 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임대 차계약 신고 의무 등을 받는 민간임대주택
 - 나. 준자율형: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
 - 다. 지원형: 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보호 사항과 최초 임대료

제한 등을 적용받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할인 공급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받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

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,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·준자율형·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)
- ⑧ 제2항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 - 가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
 - 나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또는 지원형에 한정한다)으로 변경하는 경우
 - 다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으로 변경하는 경우

제18조제2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"를 "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 한다) 건설용으로 토지"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 동산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"으로, "수의계약"을 "수 의계약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민간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"으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"을 "민간임대주택 연면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을 "건폐율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제2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을 "용적률: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로, "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"를 "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.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건축법」"을 "층수 제한: 「건축법」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 한까지 완화

나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. 다만,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4. 건축 제한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 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,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
- 5. 주차장: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(이하 이 조에서 "건축비의 가격"으로 한다)으로 하고, 그 부속토지는 시·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건 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.

제21조의3 전단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
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를 "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"를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"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를 "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각각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 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각각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"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"을 각각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5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"으로

한다.

제32조의 제목 "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)"를 "(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본문 중 "시행자"를 "시행자(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 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"(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)"를 "(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)"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며.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"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"을 "건축 제한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"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"를 "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을 "건폐율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"을 "용적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 로. "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"를 "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.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한다.

- 가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 한까지 완화
- 나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. 다만,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5. 주차장: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제35조의2 전단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제36조제1항 전단 중 "시행자"를 "시행자(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 건설용"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3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"을 "촉진지구 조성사

업"으로 한다.

제41조의2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제1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"를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"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또는 1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다주택(자율형 및 주자율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제42조의2의 제목 "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)"을 "(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

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"제2조제4호 또는 제5호"를 "제2조제4호·제5호 또는 제5호의2"로, "기간"을 "최소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43조제6항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"으로,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본문 중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"을 "임대사업자(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"으로, "임대주택"을 "임대주택 유형, 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은 임

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.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이 조의 개정은 개정 당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

제45조제1항 중 "임대사업자는"을 "임대사업자(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)는"으로 한다.

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 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 거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.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방공사 또는"을 "지방공사,"로, "한다)"를 "한다)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"주택도시보증공사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"을 "지방공사,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3항 중 "지방공사 및 부동산원"을 "지방공사,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"로 한다.

제65조제3항제5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이란	4
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	
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	
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	
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	
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	
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	라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	민간임대주택
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	
민간임대주택	
마. (생 략)	마. (현행과 같음)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"20년장기민간임대주택"
	이란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
	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
	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
	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

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
 가. 자율형: 이 법에 따른 임

 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

 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

 무 등을 받는 민간임대주

 택

나. 준자율형: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 택

다. 지원형: 나목에 따른 임차 인의 권리보호 사항과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적용 받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할인 공급 또는 이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받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

7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<u>"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</u>

6. 삭 제7. ~ 11. (생 략)12.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

급촉진지구"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 는 지구를 말한다.

- 13. 14. (생략)
- 15. "복합지원시설"이란 <u>공공지</u> 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하다.
- 제5조(임대사업자의 등록) ① (생 제5조(임대사업자의 등록) ① (현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.
 - 1. 삭 제
 - 2. (생략)
 -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

③ ~ ⑦ (생 략) <신 설>

구"	란	공공	'지원민간약	임대주택
및	20 ¹	년장.	기민간임대	주택(준
<u>자</u> 율	울형	및	지원형에	한정한
다)				

- 13. 14. (현행과 같음)
- 15. -----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 기민간임대주택-----

행과 같음)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, 20년장기 민간임대주택(자율형・준자율 형 ·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등 록하여야 한다)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 ⑧ 제2항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

(생 략)

②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공공 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 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 유하고 있는 공공기관[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 (이하 "매입공공기관"이라 한 다)을 포함한다]이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「택 |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하는 경우
- 나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 자율형 또는 지원형에 한 정한다)으로 변경하는 경 우
- 다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 원형에 한정한다)으로 변 경하는 경우

제18조(토지 등의 우선 공급) ① 제18조(토지 등의 우선 공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공공지원민
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
임대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
한정한다) 건설용으로 토지
<u>공공지원민간임</u>
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

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

③ ~ ⑤ (생 략)

⑥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(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)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제21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저 관한 법률」 등에 관한 특례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권자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(이하 "승인권자등"이라 한다)는 임대 사업자가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 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「주택

001/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
수의계약(공공지원민간
임대주택과 20년장기민간임대
주택 중 지원형에 한정한다)
<u>.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6
공공지원민간임
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
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
세21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」 등에 관한 특례) -
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
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이하

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경우에 한정한다.

- 1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</u>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

이 조에서 "민간임대주택"이라
한다)을
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
<u>택</u>
민간임
대주택 연면적
1. 건폐율: 「국토의 계획 및 이
용에 관한 법률
2. <u>용적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</u>
용에 관한 법률
<u>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</u>
<u>화한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3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 3. 층수 제한: 「건축법」 ----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

<신 설>

- 가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 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까지 완화
- 나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 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. 다만, 같은 법 제36 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4. 건축 제한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 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<신 설>

제21조의2(용적률의 완화로 건설 되는 주택의 공급 등) ① 승인 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 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 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<u>공공지</u> 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 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(이하 "기준용적률" 이라 한다)보다 완화된 제21조 제2호에 따른 용적률(이하 "완

용도,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
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
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건축을 허용

5. 주차장: 20년장기민간임대주 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 을 완화하여 적용

세21조의2(용적률의 완화로 건설
되는 주택의 공급 등) ①
<u>공공지</u>
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
민간임대주택

화용적률"이라 한다)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·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명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.

1.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 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·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, 그 부속토지는 시·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.

 1
ı.
<u>이 경우 주택의</u>
공급가격은 「주택법」 제57
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
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에 해당하는 가격(이하 이 조
에서 "건축비의 가격"으로 한
다)으로 하고, 그 부속토지는
시 ·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

2. ~ 4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21조의3(용도지역의 변경 결정 저 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 급 등)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30 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 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 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건설, 공급,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, 복합지원시설의 설 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준용적 률"은 "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 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"로, "완화용적률"은 "용 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"로 본다.

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
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수 있다.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용도지역의 변경 결정
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
급 등)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
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
제4장 민간임대주택

공급촉진지구

- 제22조(촉진지구의 지정) ① 시· 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 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(이하 "촉진지구"라 한 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촉진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·공급될 것
 - 2. · 3. (생략)
 - ② 삭 제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 을 건설·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(생 략)
- 제23조(시행자)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 (이하 "지정권자"라 한다)는 다

공급촉진지구
제22조(촉진지구의 지정) ①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
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민간
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1
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
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
<u>택</u>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③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
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시행자) ①

음 각 호의 자 중에서 <u>공공지원</u>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를 지 정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<u>공공지</u> 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 설사업 중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 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
- 1. (생략)
- 2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 건설 사업 등 주택건설사업

③ ~ ⑦ (생 략)

- 제27조(촉진지구 지정의 해제) ① 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(생략)
 - 2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

<u>민간임대수</u>
<u>택</u>
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민간임대
주택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
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
1. (현행과 같음)
2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
년장기민간임대주택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세27조(촉진지구 지정의 해제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민간임대주택

②·③ (생 략) 제28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(이하 "지구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

-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~ ⑦ (생 략)
- 제2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 허가 등의 의제)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·승인고 시 또는 변경승인·변경승인고 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
<u>민간임대주택</u>
·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민간임대주택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・
허가 등의 의제) ①

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신고
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해
제·심의 등(이하 "인·허가등"
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
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 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 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(허가 기간은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)
- 6. ~ 29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제32조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)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·건축·환경·교통·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(이하 "통합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<u>민간임대주택</u>
6. ~ 29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]32조 <u>(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</u>
원회) ①
민간임대주
<u>택</u>

- 1. ~ 10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- 제34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시 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~ ④ (생 략)
- 제35조(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 례)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다.
 - 1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</u> 한 법률」 제76조에 따른 용 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, 종 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

. = • , = = /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4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<u>시</u>
행자(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
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
한다)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
<u> 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)</u> ①
고 고 리 이 미 리 이 리 즈 테 . 미 . 0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
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
및 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
조에서 같다)
1. 건축 제한: 「국토의 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」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 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, 일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 를 허용. 다만,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 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2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</u>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조 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
- 3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</u>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<u>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</u>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	또
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	외_
2. 건폐율: 「국토의 계획 및	<u> 0</u>
용에 관한 법률	
	_
3. <u>용적률: 「국토의 계획 및</u>	<u> </u>
<u>용에 관한 법률」</u>	
<u>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</u>	완
<u>화한다.</u>	1) .
<u>가. 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	
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</u> 글	
<u>관한 법률」 제52조 및</u> 가은 법 제70조 및 과거	
<u>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</u> 령에 따른 용적률의 ²	

<신 설>

4. (생략) <신 설>

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까지 완화

- 나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 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<u>상한의 100분의 120까</u>지 완화. 다만, 같은 법 제36 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주차장: 20년장기민간임대주 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 을 완화하여 적용
-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<u>공</u> | ② -----<u>공</u>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 | 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 기민간임대주택-----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
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
성한 토지에 <u>공공지원민간임대</u>
<u>주택</u> 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
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
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
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
제35조의2(촉진지구에서의 용적
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
주택의 공급 등) <u>공공지원민간</u>
<u>임대주택</u> 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
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
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
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,
공급,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, 복
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
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. 이
경우 "승인권자등"은 "지정권자
또는 승인권자등"으로, "지구단
위계획"은 "촉진지구 지정 전의
지구단위계획"으로 본다.
제36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에 관한

제36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<u>시행자</u>에게

③
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 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
제35조의2(촉진지구에서의 용적
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
주택의 공급 등) <u>공공지원민간</u>
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
주택(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
<u> 정한다)</u>
· 제36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에 관한 특례) ①
2 2 2 4 4 5 5
시 행자(20년장

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 나 매각·대부할 수 있다. 이 경 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 내로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7조(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변경) ① 매입 공공기관이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제 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 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 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.

② (생략)

- 제39조의2(준공검사) ①·② (생략)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준공 검사를 한 결과 <u>공공지원민간임</u> 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 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 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

	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
	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)
	<u>.</u>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37조(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
	부동산 활용계획 변경) ①
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
	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율형
	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 건설용-
	② (현행과 같음)
제	39조의2(준공검사) ①・② (현
	행과 같음)
	③
	촉진지구 조성사
	<u></u> 업

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, 실시 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 략)

- 제41조의2(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)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,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28조, 제28조의2,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4조, 제36조, 제39조, 제39조의 2, 제40조,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2조(민간임대주택의 공급)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 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여야 한다.
 - 1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의 경우: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
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	41조의2(촉진지구 밖의 사업에
	대한 준용) <u>민간임대주택</u>
제	· 42조(민간임대주택의 공급) ①
	 1 고고리이미리이테즈테 미 00
	1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</u> 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
	한정한다)

급

- 2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 우: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
-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 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③·④ (생 략)
- ⑤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4 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 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 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(생략)

제42조의2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| 제42조의2(민간임대주택의 중복

2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 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----

-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 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----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--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-----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 원형에 한정한다)-----
- ----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,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20 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-----
- (7) (현행과 같음)

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) ① 국 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 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 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이라 한 다)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 하고 있는 임차인(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

-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 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산관리 지정기관"이라 한다)에 통보하 여야 한다.
- 1. ~ 5.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 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,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 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u>입주 등의 확인)</u> ①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
원형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
<u>서 같다)</u>
②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임
<u>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임</u> <u>차인</u>
<u>차인</u>
<u>차인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차인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u>차인</u>
<u>차인</u>
<u>차인</u>

제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) 제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 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 호의 규정에 따른 <u>기간(이하</u> "임대의무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 야 하며,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② ~ ④ (생 략)

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단서신설>

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</u> 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

#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능)
①
<u>제2</u> 조제4호·제5호 또
<u>는 제5호의2최소기간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
<u>에 한정한다)</u>
rl nl
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
다.
<u></u>
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</u>
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

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을 양도 할 수 있다.

- 제44조(임대료)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에 최초 임대료(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.
 - 1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의 경우: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 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
 - 2.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</u>의 경우: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. 다만,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(이하 "종전임대차계약"이라 한다)이 있는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임대료
 - ② <u>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</u>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

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
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
<u> 정한다)</u>
제44조(임대료) ①
1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
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
<u>한정한다)</u>
2. <u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</u>
년장기민간임대주택(자율형
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)
② 임대사업자(20년장기민간임
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

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임대

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 역의 임대료 변동률,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 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 <단서 신설>

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제45조(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)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 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

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-
임대주택 유
형, 임대주택
만,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준자
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)은
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
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
있다.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이
조의 개정은 개정 당시 민간임
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민
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
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
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효력
이 없다.
]45조(임대차계약의 해제·해지
등) ① 임대사업자(20년장기민
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

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.

② (생략)

제51조(민간임대주택의 관리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-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 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협의하여야 한다. <단서 신 설>
 - 1. ~ 5. (생략)
 - ⑤ (생략)
- 제59조의2(임대사업 등의 지원) 제59조의2(임대사업 등의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, 지방공사 또는 「한 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																•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51조(민간임대주택의 관리) ① ~ (6) (현행과 같음)
 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 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 등 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4)	 	 	 	

----. 다만,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4 호는 제외한다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1			
	지방공	사 <u>,</u>	

동산원(이하 "부동산원"이라 한 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 하다.

- 1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
- 2. (생 략)
-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 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. • 5. (생략)
-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 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 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-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

<u>한</u>
다)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
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
"주택도시보증공사"라 한다)
1.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</u>
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

-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 ---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 년장기민간임대주택-----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②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② -----지방공사,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
- ③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③ -----지방공사,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

는	정	보를	0] 1	법ㅇ	네 서	정	한	목	적
외	의	다른	용	도	已 /	사용	-하	거	나
다	른	사람	또는	=	기관	·에	제	공	하
거1	나	누설	해서	는	아ા	긔 된	1	} .	

제65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4. (생략)
- 5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공</u> <u>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을 공급받 은 자

6. (생략)

- 제6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<u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/u>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 하지 아니한 자

제65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
<u>Ф</u>)
③
· 1. ~ 4. (현행과 같음)
5
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
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에 한
<u>정한다)</u>
6. (현행과 같음)
제67조(과태료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
0년장기민간임대주택(지원형
에 한정한다)
<u>" " 0 L 7 /</u>
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